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3 선고 2024가단1021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

피 고 1. B

2. C교회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13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3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D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

11. 3. 접수 제122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,

나. 피고 C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11. 17.

접수 제127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주문과 같다.

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1. 3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 C교회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1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주문 제2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